

서울 행정 법 원

제 13 부

판 결

사 건	2006구합2729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0000	
피 고	법무부장관	
변 론 종 결	2006. 10. 24.	
판 결 선 고	2006. 11. 28.	

주 문

1. 피고가 2005. 5. 24. 원고에게 한 2005. 4.까지 징계받은 검사들의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11. 4. 피고에게 1998.부터 2004. 10.까지 감사의 징계현황 즉, 이름, 직위, 징계사유, 징계내용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달 9. 위 청구 중 아래와 같이 적발내용 및 처분결과를 표시한 징계현황에 관하여만 공개하고, 해당 감사의 이름, 징계내용,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적발내용>

연도별 유형별	합계	금품·향응수수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타
1998	2			2	
1999	2			2	
2000	2		2		
2001					
2002					
2003	9	2	4	3	
2004. 10.	4		3	1	

<처분결과>

	계	징계내용					
		면직	정직	감봉	중근신	경근신	견책
1998	2			1			1
1999	2	1				1	
2000	2				2		
2001							
2002							
2003	9		1	2	5		1
2004. 10.	4			1	1	2	

나. 원고는 다시 2005. 5. 2. 피고에게 ‘1998. 1999. 관보에 게재된 감사징계 내용’

및 ‘2004. 10. 이후 검사 징계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5.

5. 3. 공개결정을 하였고, 공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0 1998. 1999. 관보에 게재된 검사징계 현황>

연도	성명	적용법조 및 처분내용	처분일	비고
1998	주 ○ ○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감봉 3월’	1998. 10. 17.	2003. 8. 15. 특별사면
1999	심 ○ ○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 ‘면직’	1999. 2. 4.	2001. 8. 24. 면직처분취소 (대법원 2000두7704)

0 2004. 10. 이후 검사징계처분 현황 : 해당 없음

다. 원고는 다시 2005. 5. 20. 피고에게 2005. 4.까지 징계받은 검사들의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한 구체적인 징계사유(시기는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원고가 제출한 신청서 문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정보공개청구를 한 일련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1998.부터라고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달 24.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 속에는 해당 검사 및 관련자들을 식별해 낼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폭넓게 분포되어 있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분리해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유형별 징계사유와 처분결과, 관보에 게재된 징계처분 검사의 인적사항이 공개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징계사유 공개시 해당 검사를 쉽게 식별해 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05. 6. 9.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달 20.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2005. 9. 23.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가 한 위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원처분주의에 비추어 볼 때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는 그 원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 위원회는 2006. 4.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해 5.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검사징계법 제23조에 따라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왔는데, 관보에는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적시 없이 ‘징계처분일자, 징계대상자의 현 소속 및 직위, 이름, 근거법령, 징계의 종류’만을 게재하여 왔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검사는 고위 공직자이며 준사법기관으로서 막중한 사명을 띠고 있으므로 이러한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 검사징계법은 검사의 징계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사 이 사건 정보가 같은 조항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제외사유인 같은 호 단서 나.목 소정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것이거나, 같은 호 단서 다.목 소정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호 단서 라.목 소

정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에 해당하므로 역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바, 먼저 이 사건 정보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 제17조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와 모든 사람이 누구나 자기 스스로의 뜻에 따라 개인의 삶을 영위해가며 개성을 신장시키기를 바라고 사생활에 관하여 외부적 간섭을 원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와 관련된 개인의 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정보는 일정 기간 중의 검사들의 구체적인 징계사유로서, 비록 그것이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징계처분대상자의 이름, 소속 및 직위, 근거법령, 징계처분의 내용이 관보를 통해 공표되고 있고, 피고가 2004. 11. 9.과 2005. 5. 3. 원고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정보공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징계자인 해당검사들에 대한 인격 및 사회적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하여 그들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및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는 위 조항 소정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일응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소정의 공

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인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가)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특별히 법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나)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제기와 그 유지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고, 그 개개인이 국민 또는 법원에 대하여 행정행위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독립관청이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 그 임무의 중요성과 공공성이 매우 높은 점, (다) 이러한 점에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고, 검사징계법 제23조도 검사의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이를 관보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라)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 (마) 검사에게는 강한 도덕성과 직업윤리의식이 필요하고,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철저하고 공정한 징계가 행하여져야 할 것인바, 정보공개로 인하여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징계로부터 해당 검사를 보호할 수 있고, 검사 스스로의 정화활동 및 윤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으며, 다른 검사들에게는 행동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 (바) 고위 공직자로서의 검사의 신분, 국민의 기본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업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검사가 자

신의 신상과 징계사유가 공개됨으로써 수치심을 느끼고 명예가 훼손된다고 하더라도 그 보장 정도에 있어서 일반인과는 차이를 둘 수 밖에 없는 점, (사) 같은 법조인인 법관의 경우 대법원은 법관징계법에 의하여 법관에 대한 징계를 관보에 게재함에 있어 징계대상자의 소속, 이름, 징계처분의 내용뿐만 아니라 징계사유까지 밝히고 있고, 변호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대한변호사협회는 소속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있는 경우 이를 공고하면서(현재 ‘인권과 정의’라는 잡지에 공고하고 있다) 징계대상자의 이름, 사무실 주소, 생년월일뿐만 아니라 간략하게나마 징계사유의 요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정보공개로 함으로써 얻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다.목의 제외 사유인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정보 속에는 해당 검사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을 식별해 낼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폭넓게 분포되어 있어 이를 모두 삭제한다면 징계사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곤란하여 공개의 실익이 없어지고, 삭제하지 않으면 필요 이상으로 관련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징계회의록, 징계결정서 등 징계의 전 과정과 관련자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작성된 문서 자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처분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인 징계사유를 밝혀달라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로서는 얼마든지 관련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도 징계대상자의 징계사유

를 밝힐 수 있다고 보여진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있고,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태종 _____

 판사 김선희 _____

 판사 오태환 _____